

남 해 군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습니다.

선 람	기 관 의 장



제 681호 2021. 1. 5.(화)

규 칙

남해군 규칙 제1189호 남해군 직무대리 규칙 전부개정규칙	1
남해군 규칙 제1190호 남해화폐 화전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5

훈 령

남해군 훈령 제340호 남해군공무원부조리신고포상금지급규정 폐지규정	18
남해군 훈령 제341호 남해군 실무공무원 대외직명제 운영규정	20

고 시

남해군 고시 제2020-237호 대사지구 지방관리 방조제 개보수사업 시행계획 승인 고시 ...	22
남해군 고시 제2020-239호 202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고시	24
남해군 고시 제2020-240호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고시	27
남해군 고시 제2020-241호 죽전지구 지표수보강개발사업 시행계획변경 고시	30
남해군 고시 제2020-242호 소량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공사 실시계획 변경 고시	32
남해군 고시 제2020-243호 하천점용허가 고시	35
남해군 고시 제2020-244호 하천관리청이 아닌 자의 하천공사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 ...	36
남해군 고시 제2020-245호 지적측량기준점 측량성과(지적도근점) 고시	38
남해군 고시 제2020-246호 평산2마을 농어촌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기본계획 승인 고시	40
남해군 고시 제2020-247호 갈현 마을단위 특화개발사업 기본계획 승인 고시	43
남해군 고시 제2020-248호 하천점용허가 고시	45

공 고

남해군 공고 제2020-1581호 공시송달 공고	46
남해군 공고 제2020-1587호 유어장 지정사항 공고	48
남해군 공고 제2020-1595호 북변천 소하천정비 시행계획의 공고(변경)	49
남해군 공고 제2020-1608호 소하천등 정비(소하천, 소하천구역, 소하천시설의 점용·사용) 허가 공고	50
남해군 공고 제2020-1620호 남해군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51
남해군 공고 제2020-1638호 소하천등 정비(소하천, 소하천구역, 소하천시설의 점용·사용) 허가 공고	56

회 략									
-----	--	--	--	--	--	--	--	--	--

발행 : 남해군 편집 : 기획예산담당관(860-3045, 행정 3045)

규 칙

남해군 규칙 제1189호

남해군 직무대리 규칙 전부개정규칙

남해군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의결된 남해군 직무대리 규칙 전부개정규칙을 공포한다.

2021년 1월 5일

남 해 군 수

남해군 직무대리 규칙 전부개정규칙

남해군 직무대리 규칙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남해군 직무대리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남해군의 직무 수행에 공백을 없게 하며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직무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정대리) 군수 또는 보조기관의 결원, 출장 그 밖의 사고(이하 “사고” 라 한다)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직무대리(이하 “대리” 라 한다)한다.

1. 군수가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군수가 대리하고, 군수·부군수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제2호에 따른다.
2. 부군수가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 순위에 따른 국장이 대리하고, 국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본청의 직제 순위에 따른 부서장이 대리한다.
3. 국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해당 국의 직제 순위에 따른 부서장이 대리한다.
4. 부서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해당 부서의 직제 순위에 따른 팀장이 대리한다.
5. 직속기관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해당 직속기관의 직제 순위에 따른 부서장이 대리하고, 부서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 순위에 따른 팀장이 대리한다. 다만, 단일부서로 이루어진 직속기관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해당 직속기관의 직제 순위에 따른 팀장이 대리한다.
6. 읍면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읍면장이 대리하고, 읍면장·부읍면장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제7호에 따른다.
7. 부읍면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해당 읍면의 직제 순위에 따른 팀장이 대리한다.

제3조(지정대리) ① 제2조에 따라 대리할 사람이 확정되지 않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군수가 소속 직원 중에서 직급 순위에 따라 지정한다.

② 팀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해당 부서장이 소속 직원 중에서 지정한다.

③ 제1항, 제2항에 따라 대리할 때에는 별지 서식에 따른 문서로서 한다.

제4조(책임) 이 규칙에 따라 대리하는 사람은 그 권한에 상당하는 책임을 진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서식]

직무대리 명령서

1. 직무대리 직명 :

2. 직무대리자

○ 직 :

○ 성명 :

3. 대리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위와 같이 ○○○직무대리를 명함.

 년 월 일

○ ○ ○ ○ (인)

남해군 규칙 제1190호

남해화폐 화전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남해군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의결된 남해화폐 화전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공포한다.

2021년 1월 5일

남 해 군 수

남해화폐 화전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남해화폐 화전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남해화폐 출납 및 정산) ① 「남해화폐 화전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른 판매대행점은 인쇄업체로부터 남해화폐를 인수받으면 담당공무원의 입회하에 별지 제1호서식의 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 서명 날인 후 보관하여야 한다.

② 판매대행점은 별지 제2호서식의 남해화폐 수불대장에 남해화폐 수불상황을 기록·관리하고, 그 내용을 남해화폐 판매관리 프로그램에 입력하여야 한다.

③ 조례 제5조제3항에 따른 제출서식은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제3조(가맹점 등록 및 관리) ①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가맹점이 되려는 자는 군수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가맹점 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등록한 가맹점에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 등록사항 변경 신청을 하고자 하는 가맹점은 사유발생일 30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의 가맹점 등록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가맹점 등록을 해지하려는 가맹점은 별지 제7호서식의 등록 해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환전청구) ①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에 따라 가맹점이 환전을 청구할 때에는 판매대행점에 별지 제8호서식의 환전 청구서에 청구금액만큼의 남해화폐를 붙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환전기한은 청구한 날부터 영업일 3일 이내로 한다. 다만, 전통시장 상인회 또는 번영회에서 환전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청구 다음 날까지 환전하여야 한다.

제5조(환전된 남해화폐의 처리) ① 판매대행점은 환전된 남해화폐를 천공 등 재사용이 불가능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판매대행점은 환전된 남해화폐를 날짜별로 분류하여 회수한 날부터 1년간 자체 보관하며, 보관기간이 지난 남해화폐는 별지 제9호서식의 폐기조서를 작성하여 천공된 남해화폐와 함께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남해화폐의 구매한도)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른 남해화폐 사용자당 구매한도는 액면금액 30만원으로 한다.

제7조(본인인증) 법 제19조에 따라 남해화폐의 건전한 유통관리를 위하여 남해화폐를 처음으로 구매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0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 본인인증을 받아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폐지) 남해군 남해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은 폐지한다.

【별지 제1호서식】

남해화폐 인계인수서

1. 상품권 현황

(단위 : 매/천원)

권면금액	발 행 내 역		판 매 내 역		보 유 내 역	
	매 수	발행액	매 수	판매액	매 수	보유액
계						
1만원권						
5천원권						
1천원권						

2. 상품권 거래내역

(단위 : 원)

환전액	미환전액	이자발생액	통장잔액	비 고

※ 첨부 : 통장 잔액증명서 및 증명자료

「남해화폐 화전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남해화폐 인계인수서를 작성함.

년 월 일

인계자	직	성명	(인)
인수자	직	성명	(인)
입회자	직	성명	(인)

남해군수 귀하

[별지 제3호서식]

남해화폐 판매 정산서
(년 월)

1. 보유현황 (단위 : 매/천원)

구 분	전월보유누계		금월발행		금월판매		잔 량		비고
	매수	금액	매수	금액	매수	금액	매수	금액	
계									
1만원권									
5천원권									
1천원권									

2. 판매현황 (단위 : 원)

구분	계	전월판매누계	금월판매액	비고
계				

3. 환전현황 (단위 : 원)

구분	계	전월환전누계	금월환전액	비고
계				

4. 미환전 잔액 및 통장잔액 비교 (단위 : 원)

미환전 이월액 (A)	금 월 판매액 (가)	금 월 환전액 (나)	미환전 잔 액 (B=A+가-나)	통장잔액 (C)	차액 (D=B-C)

5. 차액내역(D = E - F + G - H + I) (단위 : 원)

전월 미수금 회수액(E)	금 월 환전 미지금액(F)	금월 외상 판매액(G)	이자발생액 (H)	이자 세입 조치액(I)

※ 붙 임 : 항목별 증명자료 등

년 월 일

작성자(담당자) 직 성 명 (인)
 확인자(과 장) 직 성 명 (인)
 입회자(차 장) 직 성 명 (인)

남 해 군 수 귀하

[별지 제4호서식]

남해화폐 가맹점 등록신청서						처리기간			
						5 일			
신	성 명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성별	남, 여		
	주 소								
청	상 호		전화 번호	사무실					
	업 소 재 지			휴대폰					
인	주 요 취급품목			할인율	%				
<p>「남해화폐 화전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남해 화폐 가맹점 등록을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신 청 인 (서명 또는 인)</p> <p>남 해 군 수 귀하</p>									
<p>본인은 이 건 붙임서류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민원사항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행정정보를 확인 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신 청 인 (서명 또는 인)</p>									
<p>본인은 남해화폐 가맹점 등록, 상품권 환전거래를 함에 있어 필요한 개인(신용) 정보를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하는 것 에 동의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신 청 인 (서명 또는 인)</p>									
<p>※구비서류</p> <p>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p> <p>2. 거래은행 통장 사본 1부.</p>						<table border="1"> <tr><td>수수료</td></tr> <tr><td>없음</td></tr> </table>		수수료	없음
수수료									
없음									

[별지 제5호서식]

남해화폐 가맹점 등록증

등록번호	남해 -		
성명			
생년월일		성별	남, 여
주소			
상호			
업소소재지	경남 남해군		
취급품목			
고객우대			

위 업소를 「남해화폐 화전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남해화폐 가맹점으로 등록합니다.

년 월 일

남 해 군 수

[별지 제6호서식]

남해화폐 가맹점 등록 변경신청서						처리기간
(등록 번호 : 남해 - 호)						3일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성별	남, 여
	상호			전화번호 (휴대폰 :)		
	업소재지					
	주소					
신청사항	변경 전			변경 후		
변경사유						
<p>「남해화폐 화전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남해화폐 가맹점 등록 변경을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신청인 (서명 또는 인)</p> <p>남 해 군 수 귀하</p>						
※ 구비서류 1. 가맹점 등록증서 원본 2.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없음

[별지 제7호서식]

남해화폐 가맹점 등록 해지 신청서

처리기간

즉시

신	성 명		생년월일		성별	남, 여
	상 호			전화번호	(HP:)	
청	업 소 소재지					
인	주 소					

사
유

「남해화폐 화전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남해 화폐 가맹점 등록 해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남 해 군 수 귀 하

※ 구비서류
가맹점 등록증 원본

수수료

없음

[별지 제8호서식]

남해화폐 환전 청구서

상품권 종류	수량(매)	금액(천원)	비 고
계			
1만원권			
5천원권			
1천원권			

상기와 같이 남해화폐 환전을 청구합니다.

청구자 상 호 : (가맹점 남해 - 호)
 소 재 지 :
 전화번호 :
 대 표 자 : (인)

입 금 처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	------

지점장 귀하

남해화폐 환전청구서 접수증

환전 청구내역

상품권 종류	수량(매)	금액(천원)	비 고
계			
1만원권			
5천원권			
1천원권			

접수일자 : 년 월 일 담당자 : (인)

[별지 제9호서식]

남해화폐 폐기조서

○ 폐기대상 기간 : ~

권면금액	매 수	폐기방법	비 고
계			
1만원권			
5천원권			
1천원권			

위와 같이 보관기간이 지난 남해화폐를 폐기하였음.

년 월 일

폐 기 자 (담당자) : 직 성 명 (인)
 확 인 자 () : 직 성 명 (인)
 입회자(담당공무원) : 직 성 명 (인)

남 해 군 수 귀 하

[별지 제10호서식]

본인인증 대체 신청서

- ☑ 남해화폐 화전(花錢) 통합관리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위하여 본인인증을 필수로 하고 있으니 불편하시더라도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인증은 최초 1회에 한하며 이후 구매 시에는 본인인증이 필요 없습니다.
- ☑ 본인인증이 불가능한 경우 아래의 주의사항에 유념하여 본인인증 대체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미제출시는 화전(花錢) 구입이 제한됩니다.

작성자	성명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주소	연 락 처

사 유 (※ 해당 사유에 V 표시)	<input type="checkbox"/>	휴대전화 명의를 다름
	<input type="checkbox"/>	휴대전화 없음
	<input type="checkbox"/>	카드 없음

주의사항

- ☑ 본인 소유의 휴대전화가 있음에도 본인인증 없이 남해화폐를 구입하는 등 부정구입이 적발 시에는, 남해화폐 구매한도 추가분에 대한 부당이득을 환수하며 향후 남해화폐 구입을 제한합니다.
※ 건전한 남해화폐 유통을 위하여 사후관리시스템을 운영 중입니다.
- ☑ 본인인증 없이 종이 남해화폐를 구입한 후 명의를 다른 휴대전화로 모바일 남해화폐를 구입하는 경우, 휴대전화 명의자의 남해화폐 구매한도가 모바일 남해화폐 구매금액만큼 차감됩니다.
※ 남해화폐 화전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7조(가맹점 등록의 취소 등)

개인정보 수집 이용 · 제공 동의서, 주민등록전산시스템 이용 동의서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주민등록법」 제29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담당 공무원의 주민등록전산시스템 열람을 통한 본인확인 절차에 동의합니다.
 - 상기 개인정보(성명, 주소, 생년월일, 연락처)는 남해화폐 통합 관리를 위해 상품권 판매기관, 한국조폐공사, 남해군에서 5년 동안 보유 및 이용하며, 이를 거부할 시에는 상품권 할인구매 혜택이 제공되지 않음에 동의합니다.
-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년 월 일

남해군수 귀하

훈 령

남해군 훈령 제340호

남해군공무원부조리신고포상금지급규정 폐지규정

남해군정조정위원회에서 의결된 남해군공무원부조리신고포상금지급규정 폐지규정을 발령한다.

2021년 1월 5일

남 해 군 수

남해군공무원부조리신고포상금지급규정 폐지규정

남해군공무원부조리신고포상금지급규정은 폐지한다.

부 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해군 훈령 제341호

남해군 실무공무원 대외직명제 운영규정

남해군정조정위원회에서 의결된 남해군 실무공무원 대외직명제 운영규정을 발령한다.

2021년 1월 5일

남 해 군 수

남해군 실무공무원 대외직명제 운영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남해군 소속 6급(6급 상당 포함한다.) 이하 실무직 공무원에게 대외직명 지정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실무직 공무원”이란 직위가 없는 남해군 소속 6급 이하의 공무원을 말한다.
2. “대외직명”이란 법령 및 자치법규상 직위가 없는 실무공무원에게 일과 업무 중심의 용어를 선정·부여하여 대외적으로 사용하는 명칭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대외직명을 적용할 대상 직종 및 공무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적용직종 : 일반직공무원(임기제공무원을 포함한다)
2. 대상공무원 : 6급 이하 실무직 공무원

제4조(대상업무) 이 규정에 따른 대외직명은 모든 업무분야를 대상으로 사용한다. 다만, 업무분야의 특성상 대외직명을 부여하기가 적절하지 않거나 필요성이 높지 않다고 판단되는 업무분야는 제외할 수 있다.

제5조(대외직명) 실무공무원의 대외직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팀 업무를 총괄하는 6급 공무원 및 연구직·지도직 공무원 : 팀장
2. 6급 이하 실무직 공무원 : 주무관

제6조(대외직명 사용) 대외직명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사용한다. 다만,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식 직급을 사용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공문서 시행문, 군 홈페이지 또는 민원부서의 직원안내 등 대외적으로 호칭이 필요한 경우
2. 공로패, 기념패, 명패, 명함 등을 제작하는 경우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 시

남해군 고시 제2020 - 237호

대사지구 지방관리 방조제 개보수사업 시행계획 승인 고시

한국농어촌공사 하동·남해지사에서 시행할 「대사지구 지방관리 방조제개보수사업」에 대하여 농어촌정비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계획 승인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2월 22일

남 해 군 수

- 1. 사업의 목적 : 배수문의 부족한 침수능력 확보 및 방조제 월파고 부족에 대한 성능을 보강하여 재해예방 및 영농편의기반 구축
- 2. 사업의 내용 및 구역
 - 가. 사업의 내용
 - ◆ 대사방조제
 - 배수문 : 배수문설치 : 1개소(2.0x2.0x1련)
 - 방조제 : 월파방지벽(H=1.0m, L=394m), 석축(H=0.7~1.2m, L=199m)
그라우팅 : 1식(H=6.5m, 2열)
 - ◆ 부대공사 가설공사 1식, 시험비 1식, 중기운반 1식
 - 나. 사업의 구역 : 경상남도 남해군 고현면 대사리 일원
- 3. 사업비 소요액 : 2,230,789천원
- 4. 사업예정기간 : 2020. 12 ~ 2024. 12(4개년)
- 5. 사업의 효과 : 노후된 시설물의 안정성 확보 및 기능성 회복으로 재해예방과 안정적인 배수 및 선량한 시설물 관리로 유지관리 효율화

6. 사업시행자 : 한국농어촌공사 하동·남해지사장
7.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세목조서 : 해당없음
8. 관계도서의 비치 및 열람장소 : 한국농어촌공사 하동·남해지사(전화 055-864-3724)

남해군 고시 제2020 - 239호

202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고시

제247회 남해군의회 제2차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202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을 「지방자치법」 제133조 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2월 22일

남 해 군 수

□ 예산규모

(단위 : 천원)

구 분	2021년 예산액	2020년 예산액 (본예산)	증 감	비 고
합 계	505,466,568	546,685,682	△41,219,114	
일 반 회 계	425,516,222	437,185,602	△11,669,380	
특 별 회 계	79,950,346	109,500,080	△29,549,734	
상수도특별회계	23,017,503	20,968,126	2,049,377	
청사건립특별회계	12,478,100	60,765,300	△48,287,200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724,315	773,913	△49,598	
자활및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825,261	702,825	122,436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555,544	708,444	△152,900	
환경기초시설특별회계	42,349,623	25,581,472	16,768,151	

□ 세입예산
○ 일반회계

(단위 : 천원)

구분	2021년 예산액	2020년 예산액 (본예산)	증감	비고
합계	425,516,222	437,185,602	△11,669,380	
지방세수입	19,501,606	21,888,585	△2,386,979	
지방세	19,501,606	21,888,585	△2,386,979	
세외수입	10,582,023	16,445,131	△5,863,108	
경상적세외수입	5,098,401	6,117,360	△1,018,959	
임시적세외수입	5,031,582	9,859,871	△4,828,289	
지방행정제제·부과금	452,040	467,900	△15,860	
지방교부세	168,665,000	171,635,000	△2,970,000	
조정교부금등	18,716,371	18,232,044	484,327	
보조금	167,464,141	168,106,561	△642,420	
국고보조금등	127,759,237	126,109,602	1,649,635	
도비보조금등	39,704,904	41,996,959	△2,292,055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40,587,081	40,878,281	△291,200	
보전수입등	40,450,569	40,450,569	-	
내부거래	136,512	427,712	△291,200	

○ 특별회계

(단위 : 천원)

구분	2021년 예산액	2020년 예산액 (본예산)	증감	비고
합계	79,950,346	109,500,080	△29,549,734	
지방세	0	0	-	
세외수입	4,456,308	5,002,700	△546,392	
경상적세외수입	4,214,950	4,794,700	△579,750	
임시적세외수입	82,358	102,000	△19,642	
지방행정제제·부과금	159,000	106,000	53,000	
지방교부세	0	0	-	
보조금	28,151,813	12,627,980	15,523,833	
국고보조금등	20,436,702	11,478,635	8,958,067	
도비보조금등	7,715,111	1,149,345	6,565,766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47,342,225	91,869,400	△44,527,175	
보전수입등	2,130,825	53,695,669	△51,564,844	
내부거래	45,211,400	38,173,731	7,037,669	

□ 세출예산

○ 일반회계(성질별)

(단위 : 천원)

구 분	2021년 예산액	2020년 예산액 (본예산)	증 감	비고
합 계	425,516,222	437,185,602	△11,669,380	
인 건 비	60,782,255	61,440,035	△657,780	
물 건 비	28,568,611	29,978,254	△1,409,643	
경 상 이 전	156,662,112	142,769,399	13,892,713	
자 본 지 출	133,055,208	151,666,647	△18,611,439	
용 자 및 출 자	23,000	0	23,000	
보 전 재 원	0	0	-	
내 부 거 래	41,176,300	39,945,731	1,230,569	
예 비 비 및 기 타	5,248,736	11,385,536	△6,136,800	

○ 특별회계(성질별)

(단위 : 천원)

구 분	2021년 예산액	2020년 예산액 (본예산)	증 감	비고
합 계	79,950,346	109,500,080	△29,549,734	
인 건 비	2,778,560	3,717,175	△938,615	
물 건 비	5,620,495	5,784,811	△164,316	
경 상 이 전	10,097,487	4,694,166	5,403,321	
자 본 지 출	53,662,185	30,041,359	23,620,826	
용 자 및 출 자	0	0	-	
보 전 재 원		590,025	△590,025	
내 부 거 래	7,625,261	64,647,228	△57,021,967	
예 비 비 및 기 타	166,358	25,316	141,042	

남해군 고시 제2020 - 240호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고시

제247회 남해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을 「지방자치법」 제133조 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2월 22일

남 해 군 수

□ 예산규모

(단위 : 천원)

구 분	경정예산액	기정예산액	증 감	비 고
합 계	593,792,485	583,445,497	10,346,988	
일 반 회 계	487,511,447	477,164,459	10,346,988	
특 별 회 계	106,281,038	106,281,038	-	
상수도특별회계	20,779,952	20,779,952	-	
청사건립특별회계	55,371,115	55,371,115	-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775,240	775,240	-	
자활및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859,522	859,522	-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642,831	642,831	-	
환경기초시설특별회계	27,852,378	27,852,378	-	

□ 세입예산
○ 일반회계

(단위 : 천원)

구 분	경정예산액	기정예산액	증 감	비 고
합 계	487,511,447	477,164,459	10,346,988	
지방세 수입	24,303,947	24,303,947	-	
지방세	24,303,947	24,303,947	-	
세 외 수 입	11,322,730	11,322,730	-	
경상적세외수입	5,754,431	5,754,431	-	
임시적세외수입	5,568,299	5,568,299	-	
지방교부세	167,139,200	167,139,200	-	
조정교부금등	25,177,838	25,322,116	△ 144,278	
보조금	207,585,991	197,094,725	10,491,266	
국고보조금등	159,218,086	148,772,168	10,445,918	
도비보조금등	48,367,905	48,322,557	45,348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51,981,741	51,981,741	-	
보전수입등	37,450,795	37,450,795	-	
내부거래	14,530,946	14,530,946	-	

○ 특별회계

(단위 : 천원)

구 분	경정예산액	기정예산액	증 감	비 고
합 계	106,281,038	106,281,038		
지방세				
세외수입	5,860,330	5,860,330		
경상적세외수입	5,494,889	5,494,889		
임시적세외수입	365,441	365,441		
지방교부세	200,000	200,000		
보조금	14,368,204	14,368,204		
국고보조금등	11,539,799	11,539,799		
도비보조금등	2,828,405	2,828,405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85,852,504	85,852,504		
보전수입등	54,389,243	54,389,243		
내부거래	31,463,261	31,463,261		

□ 세출예산

○ 일반회계(성질별)

(단위 : 천원)

구 분	경정예산액	기정예산액	증 감	비고
합 계	487,511,447	477,164,459	10,346,988	
인 건 비	58,096,258	58,096,258	-	
물 건 비	27,995,225	27,995,225	-	
경 상 이 전	163,193,390	152,618,465	10,574,925	
자 본 지 출	195,433,059	195,074,059	359,000	
용 자 및 출 자	34,104	34,104	-	
보 전 재 원			-	
내 부 거 래	31,735,261	31,735,261	-	
예 비 비 및 기 타	11,024,150	11,611,087	△586,937	

○ 특별회계(성질별)

(단위 : 천원)

구 분	경정예산액	기정예산액	증 감	비고
합 계	106,281,038	106,281,038	-	
인 건 비	3,330,555	3,330,555	-	
물 건 비	5,502,310	5,502,310	-	
경 상 이 전	4,505,063	4,505,063	-	
자 본 지 출	40,750,183	40,750,183	-	
용 자 및 출 자			-	
보 전 재 원	1,130,567	1,130,567	-	
내 부 거 래	50,953,777	50,953,777	-	
예 비 비 및 기 타	108,583	108,583	-	

남해군 고시 제2020 - 241호

죽전지구 지표수보강개발사업 시행계획변경 고시

한국농어촌공사 하동남해지사에서 시행하는 「죽전지구 지표수보강개발사업」에 대하여 농어촌정비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계획변경 승인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 82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2월 24일

남 해 군 수

1. 사업의 목적 : 가뭄에 견디는 능력이 부족하여 시설확충이 필요한 지역의 수리시설 보강으로 원활한 농업용수 공급과 안정적인 영농생산기반조성

2. 사업의 내용 및 구역

가. 사업의 내용

【저수지】

(당초)

- 제 당 : H=20m, L=239m(총저수량 559천m³/s)
- 여방수로 : 측수로 L=25.0m, 방수로 L=90.0m
- 취수시설 : 사통 3공, 복통 L=80m
- 이설도로 : 1조 L=806m

(변경)

- 제 당 : H=20m, L=239m(총저수량 559천m³/s)
- 여방수로 : 측수로 L=25.0m, 방수로 L=90.0m
- 취수시설 : 사통 3공, 복통 L=80m
- 이설도로 : 1조 L=806m, 교량형박스 1개소
- 기 타 : 토취장복구 1식

【양수장】

(당초)

- 200mm × 90kw × 2대
- 인입수로 970m, 송수관로 1,785m

(변경)

- 200mm × 120kw × 2대
- 인입수로 865m, 송수관로 1,870m

【평야부】

- 용수간선 1조 L=616m(변경없음)

나. 사업의 구역 : 경남 남해군 남면 평산리, 죽전리 일원
 다. 수해면적 : 61ha

3. 사업비 필요금액 : 10,787,022천원(변경없음)

4. 사업예정기간 : (당초) 2011. 12. 09 ~ 2020. 12. 30
 (변경) 2011. 12. 09 ~ 2021. 12. 30

5. 사업의 효과

- 안정적인 농업용수 확보와 공급으로 수리안전답화
- 관개개선 및 생산기반 확충으로 식량증산
- 작부체계 개선 및 농지이용율 제고
- 고용증대로 농외소득 증대
- 지역경제 발전효과

6. 사업시행자 : 한국농어촌공사 하동남해지사장

7.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세목조서 : 별첨

8. 관계도서의 비치

관계도서는 한국농어촌공사 하동남해지사(전화 055-880-5142)에 비치하고
 있으니 이해관계인은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남해군 고시 제2020 - 242호

소량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공사 실시계획 변경 고시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소량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공사 실시계획을 아래와 같이 변경고시합니다.

2020년 12월 28일

남 해 군 수

1. 실시계획의 개요

- 사 업 명 : 소량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공사
- 사업위치 : 남해군 상주면 양아리 산270-1 외 21필지
- 사업규모 : 급경사지 정비 1식(L=728.0m)
- 사 업 비 : 1,820백만원(공사비, 보상비, 설계비 등)
- 사업기간 : 2019. 1. 1. ~ 2021. 12. 31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남해군수
- 주소 :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9번길 12

3. 설계도서(설계예산서 포함) : 남해군 재난안전과 비치 및 열람 가능

4. 다른 사업과의 중복성 및 연계성 검토 결과

- 타부서 및 타 기관 사업의 중복성과 연계성은 없음

5. 사업효과 분석

-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를 통해 군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

6. 연차별 투자계획

사 업 명	구분	합계	‘20년까지	‘21년 추진	비 고
소량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공사	사업내용	· 실시설계 · 보상협의 · 급경사지정비	· 실시설계 · 보상협의 · 급경사지정비	· 보상협의 · 급경사지정비	
	사업비(백만원)	1,820	1,420	400	
	국비	910	710	200	
	도비	273	213	60	
	군비	637	497	140	

7. 정비사업 완료 후 유지관리계획

- 정비사업 완료 후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의거 붕괴위험 지역 지정 해제토록 하고,
- 해당시설물에 대하여 연2회(해빙기, 우기)이상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하는 등 장기적인 안전관리 예정

8. 수용 또는 사용하고자하는 토지와 그 소유자 명세 : 붙임 참조

9. 기타 공사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남해군 재난안전과(055-860-3294)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끝.

【붙임】

○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의 지번 및 지목과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서

순위	읍면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관계인		
		분할전	분할후		대장면적	편입면적	주소	성명	성명	주소	권리관계
1	상주면 양아리	1255	1255-1	임야	109	51		미등기	정성0		토지대장상 소유자
2	상주면 양아리	1256	1256-1	전	1,101	796	상주면 양아리	정차0			
3	상주면 양아리	1257	1257-1	전	1,157	568		미등기	정성0		토지대장상 소유자
4	상주면 양아리	1266	1266-1	전	122	14	이동면 양아리	정달0			
5	상주면 양아리	1272	1272-1	전	225	54	부산광역시 서구	정군0			
6	상주면 양아리	산265-1	산265-7	임야	17,785	153	이동면 양아리	이규0			
7	상주면 양아리	산267-2	산267-4	임야	2,661	652	사천시 정동면	강효0			
8	상주면 양아리	산270	산270-1	임야	3,471	676	이동면 양아리	김도0 외 2			
9	상주면 양아리	산272	산272-1	임야	14,678	183	상주면 양아리	정차0			
10	상주면 양아리	산272	산272-2	임야	14,678	52	상주면 양아리	정차0			

남해군 고시 제2020 - 243호

하천점용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 제6항에 따라 하천점용허가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2월 28일

남 해 군 수

1. 하 천 명 : 지방하천(봉천)
2. 성 명 : 남해군수(상하수도과장)
3. 주 소 :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 9번길 12
4. 점용목적 : 북변1교확장공사에 따른 호안 및 바닥보호공 설치
5. 점용위치 :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읍 남변리 645-1
6. 점용면적 : 512㎡
7. 점용기간 : (당초) 2019. 1. 1. ~ 2020. 12. 31.(2년간)
(변경) 2019. 1. 1. ~ 2021. 12. 31.(3년간)

남해군 고시 제2020 - 244호

하천관리청이 아닌 자의 하천공사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

「하천법」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하천관리청이 아닌 자의 하천공사 실시계획 변경을 인가하고 그 내용을 고시합니다.

2020년 12월 28일

남 해 군 수

- 1. 하천공사의 명칭 : 북변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 2. 하천공사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 가. 시행자 : 남해군수
 - 나. 주 소 :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 9번길 12(서변리 24-1)
- 3. 하천공사의 목적 및 사유
 - 가. 목적 : 본 과업은 북변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의 일환으로 수질개선 및 수생태계의 복원과 동시에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하천의 범람을 예방하여 소중한인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 나. 공사개요
 - 북변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따른 북변1교 재가설 및 연결호안정비
- 4. 하천공사 시행지역의 위치 :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읍 남변리 645-1번지
- 5. 하천공사의 기간 : (당초)2019. 1 ~ 2020. 12
(변경)2019. 1 ~ 2021. 12
- 6. 수용 또는 사용하려는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지목·면적, 토지 등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소유자 외의 권리자의 성명 및 주소를 적은 서류(붙임 참조)
- 7. 기타사항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사업시행기관인 경상남도 남해군 상하수도과(☎ 055-860-333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사

일련 번호	토지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	권입면적	소유자		관계인		비고
	시·군·읍·면	리·동					성명 및 영칭	주소	성명 또는 영칭	주소	
1	남해	남해	남면	645-1	천	41,534	512	국토교통부	국		
계					41,534	512					

남해군 고시 제2020 - 245호

지적측량기준점 측량성과(지적도근점) 고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지적측량기준점 측량성과(지적도근점)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2월 30일

남 해 군 수

- 측량성과 고시현황
 - 측량기준점(지적도근점) : 8점
 - 측량성과고시 내용 : 붙임 참조

지적측량기준점 측량성과(지적기준점) 고시내역

[남해군]

기준점 명칭	번호	원점	지역측지계	세계측지계	표고	경도	위도	설치일	소재지	표지재질	측량성과 보관장소	비고
도근점	14040	중부	138973.27 294818.89	239282.208 294893.856	129.189	128°02'10.5787"	34°44'41.5934"	2020-12-15	미조면 송정리 산125-18	표철	남해군청	신규
도근점	14041	중부	138966.34 294892.17	239275.273 294967.134	118.783	128°02'13.4563"	34°44'41.3439"	2020-12-15	미조면 송정리 산124-1	표철	남해군청	신규
도근점	14042	중부	138919.28 294870.14	239228.221 294945.108	114.897	128°02'12.5714"	34°44'39.8246"	2020-12-15	미조면 송정리 산98	표철	남해군청	신규
도근점	14043	중부	138912.97 295016.97	239221.906 295091.937	87.789	128°02'18.3403"	34°44'39.5705"	2020-12-15	미조면 송정리 297-2	표철	남해군청	신규
도근점	14044	중부	138952.63 295658.92	239261.573 295733.878	34.032	128°02'43.5894"	34°44'40.6417"	2020-12-15	미조면 송정리 262-1	표철	남해군청	신규
도근점	14045	중부	138769.64 295675.51	239078.577 295750.474	9.247	128°02'44.1669"	34°44'34.6986"	2020-12-15	미조면 송정리 337	표철	남해군청	신규
도근점	14046	중부	138691.62 295852.76	239000.560 295927.714	3.567	128°02'51.1016"	34°44'32.1074"	2020-12-15	미조면 송정리 1434	표철	남해군청	신규
도근점	14047	중부	138617.42 295886.08	238926.356 295961.040	2.820	128°02'52.3811"	34°44'29.6886"	2020-12-15	미조면 송정리 391-2	표철	남해군청	신규

남해군 고시 제2020 - 246호

평산2마을 농어촌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기본계획 승인 고시

「농어촌정비법」 제58조에 의거 평산2마을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기본 계획을 수립 및 승인하고,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58조 및 제8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2월 31일

남 해 군 수

- 1. 사업의 명칭 : 평산2마을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 2. 사업의 목적
 - 농어촌 취약지역 주민의 생활수준 향상과 보건·위생 및 안전을 위한 생활인프라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 주민역량 강화 등을 지원하여 농어촌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자 함
- 3. 사업비 : 2,130,000천원(국비 1,602,000, 지방비 528,000), 자부담 별도(148,400천원)
- 4. 주요사업내용
 - 생활·위생 인프라 : 마을안길 정비(920m), 가드레일 설치(130m), 상수도개량(2.4km), 재래식 화장실 정비(17개소)
 - 주택정비 지원 : 빈집정비(7호), 슬레이트지붕개량(41호), 집수리(10호)
 - 마을환경 개선 : 주차장 조성(383㎡), 마을회관 보수(186㎡), CCTV(2개소), 보안등(7개소)
 - 휴먼케어 및 주민역량강화 : 리더교육, 건강 프로그램 등

※ 분야별 사업내용

(단위 : 백만원)

사업 부문	세부사업 (공종)	사업량	사 업 비			
			계	국비	지방비	자부담
합 계			2,278.4	1,602.0	528.0	148.4
생활· 위생· 안전 인프라	소 계		1,078.1	818.8	267.3	
	■ 마을안길 정비	920m	857.4	644.9	212.5	
	■ 가드레일 설치	130m	20.0	15.0	5.0	
	■ 상수도 개량	2.4km	82.9	62.3	20.6	
	■ 재래식 화장실 정비	17호	117.8	88.6	29.2	
주택 정비	소 계		561.6	310.8	102.4	148.4
	■ 빈집철거	7호	125.3	29.4	9.7	86.2
	■ 슬레이트지붕 개량	41호	337.7	220.8	72.7	44.2
	■ 집수리	10호	98.6	60.6	20.0	18.0
마을 환경 개선	소 계		312.6	235.1	77.5	
	■ 주차장 조성	383m ²	82.6	62.1	20.5	
	■ 마을회관 보수	186.51m ²	195.0	146.7	48.3	
	■ CCTV 설치	2개소	11.0	8.3	2.7	
	■ 보안등 설치	7개소	24.0	18.0	6.0	
휴먼 케어	소 계		45.2	34.0	11.2	
	■ 치매예방 프로그램	1식	10.0	7.5	2.5	
	■ 건강 및 생활체조 프로그램	1식	10.0	7.5	2.5	
	■ 문화예술 프로그램	1식	15.0	11.4	3.6	
	■ 백서제작	1식	10.2	7.6	2.6	
주민 역량 강화	소 계		25.0	18.8	6.2	
	■ 마을리더 육성 교육	1식	10.0	7.5	2.5	
	■ 주민역량강화 교육	1식	15.0	11.3	3.7	
제경비	소 계		255.9	192.5	63.4	
	■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1식	93.9	70.6	23.3	
	■ 공사감리비	1식	122.8	92.4	30.4	
	■ 사업관리	1식	24.7	18.6	6.1	
	■ 잡지출	1식	14.5	10.9	3.6	
연계사업비	소 계	1식	계	국비	지방비	자부담
	■ 남해군 하수관거 정비사업		20,300	14,201	6,009	-

- 5. 사업시행자 : 남해군수(수탁기관 : 한국농어촌공사 하동남해지사)
- 6. 사업기간 : 2019년 ~ 2022년(4년간)
- 7. 수용 또는 사용대상 토지의 명세서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m ²)		소유자	비고
			공부	현황	전체	편입(사 용)		
1	남면 평산리	1668-7	도로	도로	1,755.3	14.9	남해군	
2	남면 평산리	1596-5	대지	대지	7.0	7.0	이○○	
3	남면 평산리	1596-6	대지	대지	33.0	33.0	이○○	
4	남면 평산리	1596-3	대지	대지	979.4	408.7	이○○	
5	남면 평산리	1595-3	임야	임야	138.3	10.7	이○○	
6	남면 평산리	1596-8	대지	대지	46.0	8.4	이○○	

8. 기타(기본계획 열람 장소)

○ 자세한 사항은 남해군청 지역활성과(☎ 055-860-361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남해군 고시 제2020 - 247호

갈현 마을단위 특화개발사업 기본계획 승인 고시

남해군 갈현 마을단위 특화개발사업에 대하여 「농어촌정비법」 제5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2조, 「어촌·어항법」 제7조 및 시행령 제7조에 의하여 기본계획을 승인 고시합니다.

2020년 12월 31일

남 해 군 수

- 1. 사업의 명칭 : 갈현 마을단위 특화개발사업
- 2. 사업 목적 : 농어촌지역 주민의 소득과 기초생활수준을 높이고, 어촌의 어메니티 증진 및 계획적인 개발을 통하여 어촌의 인구유지 및 지역별 특화 발전 도모
- 3. 위치 : 남해군 삼동면 영지리 갈현마을
- 4. 총 사업비 : 1,757백만원 (국비 72백만원, 지방비 1,685백만원), 자부담 별도(99백만원)
- 5. 사업개요
 - 기초생활기반확충
 - 갈현 디자인 커뮤니티센터 조성(지상 2층 신축, 건축면적 352.72㎡)
 - 진입도로 확포장(포장면적 2,280㎡)
 - 지역소득증대
 - 갈현숲속 야영장 조성(오토캠핑장 20면, A=3,000㎡)
 - 지역역량강화
 - 교육, 컨설팅, 홍보마케팅, 부대비용 등
- 6. 사업시행자 : 남해군수(위탁 : 한국어촌어항공단)
- 7. 사업기간 : 2019년 ~ 2022년(4년간)
- 8. 기본계획 열람 장소 : 관련자료는 남해군청 지역활성과(지역개발팀, 055-860-3613)에 비치하였으니, 이해관계인은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9.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세목 조서 : 별첨

갈현 마을단위 특화개발사업 편입(사용)토지 조서

일련 번호	토지소재		지번	지목	면적 (㎡)		소유자	비고
	읍면동	리			전체	편입		
1	삼동면	영지리	295-1	답	1,441	1,100	법인(한국농어촌공사)	
2	삼동면	영지리	198-2	구거	1,490.8	1,490.8	국(농림축산식품부)	
3	삼동면	영지리	3069	도로	447	447	국(국토교통부)	
4	삼동면	영지리	227-8	임야	232	232	개인	
5	삼동면	영지리	227-6	도로	110	110	남해군	
6	삼동면	영지리	306	답	1,610	1,610	개인	
7	삼동면	영지리	307	답	129	129	개인	
8	삼동면	영지리	308-4	전	919	537	개인	
9	삼동면	영지리	308-5	전	724	724	개인	

남해군 고시 제2020 - 248호

하천점용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 제6항에 따라 하천점용허가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2월 31일

남 해 군 수

1. 하 천 명 : 화천(지방하천)
2. 성 명 : 김무0
3. 주 소 : 부산광역시 강서구 명지동 32**
4. 점용목적 : 경작
5. 점용위치 : 경상남도 남해군 삼동면 봉화리 2156-1번지(산342-2번지 인근)
6. 점용면적 : 908m²
7. 점용기간 : 2021. 1. 1. ~ 2025. 12. 31.

공 고

남해군 공고 제2020 - 1581호

공시송달 공고

「덕신소하천 정비공사」에 편입되는 토지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6조 규정에 따라 손실보상협의요청의 등기우편을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이사불명, 폐문부재 등으로 반송되어 협의가 불가하여 동법 시행령 제4조 및 제8조,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2020년 12월 22일

남 해 군 수

- 1. 사 업 명 : 덕신소하천 정비공사
- 2. 위 치 : 남해군 설천면 덕신리 212-3번지 일원
- 3. 사업시행자 : 경상남도 남해군수
- 4. 공 고 기 간 : 2020. 12. 22. ~ 2021. 01. 05.(14일간)
- 5. 공고내용
 - 협의기간 : 2020. 12. 2. ~ 2020. 12. 31까지
 - 협의장소 : 남해군청 재난안전과 (☎055-860-3494)
 - 보상방법 : 계약체결 후 소유권 이전 등 소정의 절차를 거쳐 계좌입금
 - 위 협의기간 중 미 협의 시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 절차에 따른 손실보상
 - 보상협의 시 구비서류
 - 인감증명서 2부(보상금 수령용, 이전등기용), 주민등록 초본1부(전주소 포함),

본인명의 통장사본 1부, 기타관계서류

- 지참물 : 인감도장, 신분증

6. 공시송달 대상자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 목	지적 (㎡)	편입 면적 (㎡)	소 유 자		이해관계인			비고
		분할전	분할후				주 소	성 명	주 소	성 명	권리 관계	
1	남해군 설천면 덕신리	1140-69		도	26	26	설천면 노량리 501-1	김덕용				
2	"	1871	1871-1	답	1725.2	299.6	설천면 덕신리 1621	김연주		김영	상위인	
3	"	1855	1855-1	답	1533.6	532.3	울산광역시 남구 화합로 178번길	정민정				상속
		1385-4		도	43	43						
4	"	1394-1		천	717	717		서정기				미팅

7. 기타사항 및 문의처

- 보상협의 요청서는 「행정절차법」 제15조(송달의 효력발생)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조(송달)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에 그 송달을 받을 자에게 송달된 것으로 같습니다.
- 기간 내 협의가 없을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수용재결을 진행할 계획임을 알려 드립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남해군 재난안전과 (☎055-860-3494)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해군 공고 제2020 - 1587호

유어장 지정사항 공고

수산업법 제65조 및 유어장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장포어촌계 마을어업권 내 유어장 지정 사항을 공고합니다.

2020년 12월 21일

남 해 군 수

○ 유어장 지정 현황

지정 받는 자	지정번호	유어장명	지정 위치	지정면적 (ha)	지정기간
장포어촌계	남해군 제00056호	장포해상낚시2	창선면 장포마을지선 (마을어업제219호내)	13.6	2020. 11. 24. ~ 2023. 12. 30.
	남해군 제00057호	장포해상낚시1	창선면 장포마을지선 (마을어업제220호내)	14	2020. 11. 24. ~ 2023. 12. 30.

남해군 공고 제2020 - 1595호

북변천 소하천정비 시행계획의 공고(변경)

「소하천정비법」 제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북변천 소하천정비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공고하며, 소하천(북변천)에 대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하고자 「소하천정비법」 제10조의2(다른 법률에 의제되는 사항)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인가 고시합니다.

2020년 12월 23일

남 해 군 수

소하천명	사업 개요									비고
	공사명	공사 위치		사업량(m)			공사기간		공사 목적	
		시작하는 지점	끝나는 지점	축제 (築堤)	호안 (護岸)	기타	착공	준공		
북변천	북변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남해읍 북변리 56-4	남해읍 남변리 118-5	724	724	교량 2개소	2019. 01.01	2021. 12.31	북변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열람서류

1. 실시설계도서
2. 위치도(축척 5만분의 1 지형도)

※ 비고란에는 손실보상 등에 관한 사항을 적는다.

남해군 공고 제2020 - 1608호

소하천등 정비(소하천, 소하천구역, 소하천시설의 점용·사용) 허가 공고

「소하천정비법」 제10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소하천정비법 시행령」 제12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 및 제12조제2항에 따라 소하천등 정비(소하천, 소하천구역 및 소하천시설의 점용·사용)를 허가하였음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2월 28일

남 해 군 수

시행자 (점용·사용자)	대표자 (성 명)	강인0	주소	남해군 창선면 서부로990번길
	소하천명	고순천		
공사 (점용·사용) 개요	위치	남해군 창선면 을도리 745-1, 919, 922번지		
	면적	(당초) 40㎡ (변경) 39㎡	폐천부지(廢川敷地) 예상 면적	㎡
	기간	(당초) 2020. 6. 24. ~ 2021. 6. 23. (변경) 2021. 1. 1. ~ 2021. 12. 31.		
	목적 및 사유	진입교량, 상수도관매달기, 우수관로매설, 토지의 점용		

남해군 공고 제2020 - 1620호

남해군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남해군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2월 28일

남 해 군 수

1. 자치법규명 : 「남해군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2. 개정이유

천재지변 등 도시공원 점용허가를 받은 자의 귀책사유 없이 그 점용허가가 취소된 등의 경우에 이미 납부한 점용료를 환불하도록 개정하여 주민에게 불필요한 금전적 부담을 줄이고자 함.

3. 주요내용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조례 제3조(점용료의 납부 등)

- 천재지변 등 점용허가를 받은 자의 귀책사유 없이 그 점용허가가 취소된 경우의 점용료 환불 임의규정 수정(안 제3조의 3)

4. 의견제출

가. 의견제출기간 : 2021년 1월 18일까지

- 이 자치법규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남해군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여부와 그 사유 및 대안)
- 2)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3) 기타 참고사항 등

나. 의견 제출처

1) 주 소 : 우52425,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 9번길 12(남해군청), 환경녹지과

2) 연락처

- 전화 055-860-3654, 팩스 055-860-3707, e-mail : subi9399@korea.kr

남해군 조례 제 호

남해군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해군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환불할 수 있다.”를 “환불한다.”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점용료의 납부 등) ③ 이미 납부한 점용료는 환불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그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당분을 환불할 수 있다.	제3조(점용료의 납부 등) ③ 이미 납부한 점용료는 환불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그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당분을 환불한다.

남해군 공고 제2020 - 1638호

소하천등 정비(소하천, 소하천구역, 소하천시설의 점용·사용) 허가 공고

「소하천정비법」 제10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소하천정비법 시행령」 제12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 및 제12조제2항에 따라 소하천등 정비(소하천, 소하천구역 및 소하천시설의 점용·사용)를 허가하였음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2월 31일

남 해 군 수

시행자 (점용·사용자)	대표자 (성 명)	김금0 외 3명	주소	남해군 이동면 남서대로 *****
	소하천명	원천천 외		
공사 (점용·사용) 개요	위치	남해군 이동면 신전리 1559번지 외		
	면적	60㎡ 포함 685.21㎡	폐천부지(廢川敷地) 예상 면적	㎡
	기간	2021. 1. 1. ~ 2021. 12. 31(김금0) 2021. 1. 1. ~ 2025. 12. 31(정형0 외 2인)		
	목적 및 사유	진입로, 가교 계속 사용 등		